

 국토교통부		<b>보도설명자료</b>	
		배포일시	2019. 10. 25.(금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주택정책과	담당자	·과장 이명섭, 서기관 박진홍, 사무관 최민석 ·☎ (044) 201-3318, 3324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##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은 통계활용 가능성, 실제 청약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조선일보, 10.25) >

- ◆ 최근 분양도 없었는데, 상한제 적용? 대체 그 기준이 뭘니까
  - 동네 분양가 통계가 없으면 시·도 등 상위 통계로 계산해
  - 1년간 분양 1건도 없었는데 마포·성동 등 후보로 거론돼
  - 비싼 동네 아파트가 분양가 낮아 청약 과열 등 부작용 우려도
  - 최종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반 넘게 정부 인사, 비중립적

-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안정화 및 그에 따른 시장전반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, 향후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.
  - 그러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 중 분양가격상승률은 그간 해당 시·군·구의 분양실적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
  - 이에 해당 시·군·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\*(특·광역시)의 분양가 상승률을 사용토록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.

\* 주택건설지역 :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

- 향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.
- 「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(10.1)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량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집값 불안 우려가 큰 지역을 선별하여 지정할 계획이며,
- 제도 운용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최민석 사무관(☎ 044-201-332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